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1015호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의 이자율 고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18일국토교통부장관

1. 개정이유

시중 금리와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금리 격차, 국민 자산형성 지원 목적 등을 고려하여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금리를 인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청약저축 이자율 인상(안 제2조제3호)

- 가입일로부터 1개월 초과 1년 미만의 기간 내에 해지하는 경우의 이자율을 현행 1.3%에서 2.0%로 인상
- 가입일로부터 1년 이상 2년 미만의 기간 내에 해지하는 경우의 이자율을 현행 1.8%에서 2.5%로 인상
- 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 지난 후 해지하는 경우의 이자율을 현행 2.1%에서 2.8%로 인상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주택기금과)로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개 정 안 | 수 정 안 | 의 견 |
|-------|-------|-----|
| | | |

-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 E-메일 : pp1703@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전화 044-201-3344, 3340)로 문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